

# 사제용

## 파트너 계약 증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 및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혼인할 수 없으므로,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혼인에 필적하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금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상호관계의 확인 및 서약)

갑과 을은 두 사람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관계에 있음을 상호 확인하고, 평생 동안 서로 돕고, 가족으로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상호간에 서약한다.

### 제 2 조 (혼인 등의 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본 계약과 동등, 혹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제 3 조 (동거, 협력 및 부조의 의무)

1. 갑과 을은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고 부조할 것을 약속한다.
2.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및 기타 사용 권한을 가지는 경우, 해당하는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거주용 부동산에 동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임대주에 대한 동거인의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3. 갑과 을은 제 1 항의 부조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 이외의 제 3 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단, 갑과 을 간의 신뢰 관계 및 실질적 공동 생활 관계가 이미 파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4 조 (공동생활비용 부담)

1. 갑과 을은 그 자산, 수입,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자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용 (거주비, 식비, 수도 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타 생활상의 비용을 말하며, 이하 "공동 생활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2. 전항의 공동생활비용 부담은 본 계약이 해소될 때까지로 하고,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육비, 혼인비용 산정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계약에 위반하고, 갑과 을의 신뢰관계 및 실질적 공동 생활 관계의 파탄에 대해 귀책성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공동 생활 비용의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5 조 (일상 가사 채무에 관한 책임)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쪽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예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 조(요양 간호에 관한 위임 등)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의료 기관에서 치료, 요양, 연명 또는 수술(이하"치료 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의 치료 등의 경우에 입회하고, 본인과 함께, 또는 본인을 대신해, 의사 기타 의료 관계자로부터, 증상이나 치료 등의 방침, 전망 등에 관한 설명(차트의 공개를 포함한다)을 듣는 것을 위임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더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은 그 통원, 입원, 수술, 의식 불명 및 위독한 경우, 다른 한쪽에게 입원했을 때의 시중들기, 면회 사절 시의 면회, 치료 방침 의 결정 및 수술에 동의할 것을 위임한다. 이 경우, 다른 한쪽의 결정은 본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타 본인의 해당 시점에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킨다)에 우선하는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
3. 갑과 을은 전 2 항의 수임 사무를 완수하기 위해, 평상시에, 자신의 치료 등에 관한 희망, 의향 및 기타의 의사를 미리 다른 한쪽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치료 등에 관한 다른 한쪽의 의사를 항상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제 7 조(당사자간의 재산의 귀속)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본 계약체결 전부터 가진 재산 및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특유재산(본 계약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동일)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그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 8 조 (판단능력 저하시의 요양간호)

갑과 을은 생활 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 있고, 임의 후견 수임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대리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바, 갑 또는 을 어느 한쪽의 신체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저하했을 때, 다른 한쪽은 신체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자의 생활, 요양간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가능한 한 지원하고 일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심신상태 및 생활상황을 배려할 것과, 갑을 간에 필요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임의 후견 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합의한다.

#### 제 9 조(입양)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입양을 하는 경우는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 조(자녀의 교육감호)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일 때, 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었을 때는, 해당하는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해당 미성년자의 교육감호를 위탁하며, 갑과 을은 해당 미성년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서로 협력하여 해당 미성년자 자녀를 교육감호한다.

2. 갑과 을은 전항의 권한에는, 해당 미성년자에게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할 때, 그 의료 행위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 (차트 공개 포함)을 받고, 수술 및 그 외의 의료 행위에 동의를 하거나, 치료 방침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할 것을 확인한다.

#### 제 11 조 (사후사무의 위임 등)

1. 본 계약 당사자는 한쪽 당사자가 사망 시 서로 사망한 일방 (이하 "사망 당사자"라 한다)의 사망 후, 다음의 사무 (이하 "본건 사후 사무"라 한다)를 다른 한쪽의 당사자 (이하 "생존 당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① 친족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
  - ② 장례, 납골, 매장, 영대공양
  - ③ 미납된 조세 공과금, 의료비, 입원비용, 복지시설 이용료 및 기타 일체의 채무 변제
  - ④ 가재도구, 생활용품 처분
  - ⑤ 행정관청 등에의 각종 신고(사망 신고 제외)
  - ⑥ 사망 당사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 및 청산
  - ⑦ 이상의 각 사무에 관한 비용 지불
2. 갑과 을은 본건의 사후 사무를 처리할 때 생존 당사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상호 승낙한다.
3. 사망 당사자의 장례, 납골, 매장 및 영대공양 등은 사망 당사자의 생전의 희망이나 재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존 당사자가 결정한다.
4. 장례, 납골, 매장, 기타 본건 사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모두 사망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생존 당사자는 그 관리하는 사망 당사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5. 사망 당사자의 법정상속인, 기타 사망 당사자 지위의 승계자는 생존 당사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본건 사후사무의 위임을 해제할 수 없다.

#### 제 12 조 (사망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2.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 11 조(사후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은 전항에 의한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 제 13 조(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1. 갑과 을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 증인 2 명 이상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4 조(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해지)

1.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에게 부정한 행위(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가 있었을 때.
  - ② 상대방으로부터 악의로 유기(제 3 조 제 1 항에 위반되고 또한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함)되었을 때.
  - ③ 쌍방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별거하고, 그 기간이 5 년을 경과했을 때.
  - ④ 기타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의 생사가 3 년 이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 15 조(해제의 효력)

1. 본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 그 경우, 당사자의 한쪽에 귀책성이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한 위자료 및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 16 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감호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및 제 17 조(재산분할)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 16 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감호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본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갑과 을은 해당 미성년자와의 면회 및 기타 교류, 해당 미성년자의 감호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기타 감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협의로 정한다. 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7 조(계약해소시의 재산분할)

1.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해제 시로부터 2 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이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항 제 1 호에서 언급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제 2 호 및 제 3 호에서 언급하는 재산과, 제 4 호에서 언급하는 채무액의 합계액을 제하고 얻은 금액을 쌍방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 ① 본 계약해제시에 갑과 을이 가지는 동산, 부동산, 예금과 저금, 기타 일체의 재산 (취득 또는 수입이 있었을 때의 명의, 자금 거출자 및 현재의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유 재산도 포함한다.)

- ② 갑과 을이 본 계약체결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및 본 계약 효력의 존속 중 상속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 무상 취득한 재산
  - ③ 갑과 을 간의 신뢰관계 및 실질적 공동 생활 관계가 파탄 난 후에 갑 또는 을의 어느 한쪽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④ 갑과 을의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본 계약의 효력 존속 중에 공동 생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주택용자 포함)
3. 전항에 규정된 재산분할의 청구는, 자기명의로 재산이 전항의 계산에 의해 산출된 분할액보다 적은 당사자가, 다른 한쪽의 당사자에게 해당 차액분의 지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보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8 조(해석의 지침 및 협의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의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혼인에 관한 민법, 기타 일본법(단, 민법 제 754 조를 제외한다.) 및 해당 법령과 관련된 과거 판례의 판단에 준거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2명의 입회 아래,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주소]	[주소]
 [이름]	 [이름]
증인:	증인:
[주소]	[주소]
 [이름]	 [이름]